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732
------	-----

제출년월일 : 2001. 12. 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동해면 장기리 리단위 소규모 묘지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묘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음.

2. 주요내용

- 가.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지1”과 같다. (안 제3조)
- 나. 고성군민 누구나 장묘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면적은 제한함 (안 제5·6조)
- 다. 장묘시설의 사용기간과 사용료에 관한규정(안 제7·8조)
- 라. 매장분묘 사용권의 소멸과 취소에 관한규정(안 제9·11조)
- 마. 분묘의 설치 및 납골당 안치방법 (안 제13조)
- 바. 납골유골의 안치기간 및 처리(안 제17조)
- 사. 운영위탁의 지원·취소에 관한규정(안 제18·19·22조)
- 아. 권한의 위임사항(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공설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묘시설”이라 함은 매장묘지, 납골시설등 고성군 공설공원묘지내에 조성하여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하“장묘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매장묘지”라 함은 분묘의 형태로 시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사전에 일정구역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묘역을 말한다.
3.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납골묘”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분묘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단위를 제외한 타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사용자의 범위) ①장묘시설의 사용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고성군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자와 본적지가 장묘시설 소재지 법정리 인자에 한 한다.

②부부로서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매장묘지를 예약할 수 있다.

제6조(사용면적) 1기당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묘지 : 8.8m²(2.66평)
2. 납골묘 : 안치단 1개

제7조(사용료 등) ①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2” 와 같다. 단, 분묘관리비는 5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군수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군수가 정한 지역 거주자

제8조(분묘의 사용기간) ①매장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매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장묘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연장기간 및 연장회수를 단축할 수 있다.

③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사망자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사용권의 소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묘지나 납골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장묘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공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분묘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개장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분묘설치 및 납골당 안치등) ① 장묘시설사용자가 이용할 시설의 설치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안치시에도 또한 같다.
③ 분묘의 형태와 구조 및 석물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분묘형태의 변경) 장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군수는 사용자가 장묘시설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① 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골당 안치이후 연고자의 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을시의 화장유골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고자가 유골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원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탁) ①장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 지원)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재 또는 지원경비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권한위임)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조성된 매장분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매장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조성된 매장분묘는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④(사용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설치된 장묘시설의 관리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징수한다.

[별표1]

공설공원묘지(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
장기공설공원묘지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산209-2묘지	7,381m ²	

[별표2]

장묘시설 사용료(제7조 제1항 관련)

<매장묘지>

시설명	사용료		관리비	
	기준	금액(원)	기준	금액(원)
매장묘지	8.8m ² (1구당)	400,000	1구당 (5년기준)	50,000

<납골시설>

시설명	사 용 료		관 리 비	
	기준	금액(원)	기준	금액(원)
납골묘	1구안치단	80,000	-	-